이사회운영규정

【제정】 2001.02.06
【개정】 2001.03.12
【개정】 2001.03.28
【개정】 2001.04.19
【개정】 2001.05.17
【개정】 2001.06.28
【개정】 2002.02.05
【개정】 2002.03.09
【개정】 2002.12.26
【개정】 2004.01.15
【개정】 2004.02.26
【개정】 2004.11.26
【개정】 2010.05.25
【개정】 2010.07.01
【개정】 2011.03.30
【개정】 2012.03.16
【개정】 2013.06.25
【개정】 2014.02.25
【개정】 2014.03.28
【개정】 2014.09.23
【개정】 2015.08.11
【개정】 2016.03.23
【개정】 2019.07.18
【개정】 2020.09.24
【개정】 2022.03.29
【개정】 2022.09.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케이티스카이라이프의 이사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구성과 운영)
①이사회는 이사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5.25>
②이사회는 이사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둔다.
③이사회 주관부서는 이사회 운영 및 이사 지원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10.5.25>
④삭제 <개정 2014.3.28>

제4조(의장)
①이사회 의장은 이사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이사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 규정이 정하는 순서에 따른 사내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하고, 사내이사 전원의 유고시에는 사외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 중에서 이사회 호선으로 선출된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5.25>
②이사회 의장의 임기는 당해 이사의 임기와 동일한 것으로 한다.
③의장의 이해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중 호선으로 선출된 이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6.25>

제5조(회의종류 및 소집 등)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이사회 의장은 정기이사회 개최를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6.25> <개정 2019.07.18>
③임시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의 직권 또는 대표이사 또는 재적이사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개정 2013.6.25>
④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 7일전에 회의 개최 일시, 장소를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28> <개정 2016.3.23>

제6조(부의사항)
①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개정 2011.3.30>

1. 주주총회 소집,
2. 연도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3.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
4. 지점의 설치, 이전 및 폐지
5. 해산, 합병, 분할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
6. 자본금의 증가, 감소 및 신주의 발행 배정, 실권주의 처리
7.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 및 취소
8. 사채발행, 장기차입(1년 이상), 자기자본의 100분의 5이상의 당해연도 단기차입
9.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부권사채 발행사항의 결정
10. 주식연계채권의 발행
11. 자기자본 0.5% 이상의 타법인출자 (단, 경영권 취득이 수반되는 경우는 금액에 상관없이 의결) 및 자기자본 0.5% 이상의 타법인 지분매각 (단, 경영권이양이 수반되는 경우와 출자원금이 자기자본 0.5% 이상인 경우는 금액에 상관없이 의결)<개정 2022.9.22>
12. 자기자본 0.5% 이상의 토지와 건물의 취득 및 처분<개정 2022.9.22>
13. 5천만원을 초과하는 출연 또는 기부<개정 2013.6.25>
14. 정관의 변경
15. 아래 사규의 제정 및 개정
    가. 이사회규정
    나. 소위원회운영규정
    다. 직제규정
    라. 인사규정
    마.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바. 회계규정
사. 내부회계관리규정
아. 취업규칙
자. 전문임원관리규정 <신설 2012.3.16>
차. 경영임원관리규정 <신설 2013.6.25>
카. 준법통제기준 <신설 2020.9.24>

16. 소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17. 감사위원회 위원 추천.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제외한 소위원회의 위원 선임 및 해임 <개정 2014.3.28>
18. 감사위원회를 제외한 이사회내 소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개정 2014.3.28>
19. <삭제 2013.6.25>
20.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21. <삭제>
22. 주식배당 결정
23. 준비금의 자본전입
24.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책
25.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의 승인
26.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

26의2. 자기주식의 취득·처분 <신설 2013.6.25>

26의3. 자기주식의 소각 <신설 2013.6.25>

27. 자기자본 0.5% 이상의 자산의 취득, 처분 및 양도<개정 2022.9.22>
28. 중장기 경영계획
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대규모 내부거래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나. 주식 또는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다.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30. 10억원 이상의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 <개정 2013.6.25>
31.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안건
32. 10억원 이상의 투자를 수반하는 신규사업 추진 <개정 2013.6.25>
33. 삭제 <개정 2014.3.28>
34.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14.3.28>
35. 경영임원의 수와 보수의 변경 <개정 2012.3.16>
36. 이사 및 경영임원 법무 지원제도 도입 및 변경 <개정 2015.8.11>
37.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해진 사항, 주총위임 사항, 이사회 또는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 제1항 제15호를 제외한 규정의 제·개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규정의 제·개정은 이사회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6.25>

1. 이사회 및 임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관리의 기본체계 및 직원신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보수의 기본체계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
4.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회계기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규의 근본적인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

③ <삭제 2010.5.25>

④ 이사회에 보고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3.6.25>

1. 전분기 자기자본 0.5% 미만의 지분출자, 지분매각 사항<개정 2022.9.22>
2. 전분기 자기자본 0.5% 미만의 토지와 건물의 취득 및 처분 사항<개정 2022.9.22>
3. 전분기 10억원 미만의 지급 보증 또는 담보제공 사항
4. <삭 제 2014.9.23>
5. 자기자본의 100분의 5미만의 당해연도 단기차입
6.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및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7. 전분기 결산 및 중요경영실적
8. 전분기 자금운용 현황
9. 전분기 차입금 현황
10. 전분기 법적분쟁 현황 (년 0.5억원이상)
11. 전분기 5천만원 이하의 출연 또는 기부사항
12. 준법통제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계획 및 결과보고 <신설 2020.9.24>

제7조(의사 및 결의)
①이사회의 결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개정 2010.7.1>
②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2.3.16>
③의안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하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의장은 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에 참여시켜 이사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에 응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내용은 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0.7.1>

제8조(위임사항) <삭제 2013.6.25>

제9조(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의사록)
① 회사는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이사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관리한다. <개정 2014.3.28>
② 회사는 이사회 의결사항을 서면으로 관계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삭제 2011.3.30>

제11조의 2(소위원회) <개정 2011.3.30>
①소위원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보상위원회
2.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정 2004.1.15>
3.내부거래위원회 <개정 2011.3.30>

4.감사위원회 <개정 2014.3.28>
5.기타 필요시 이사회는 관련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한 사항에 대해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심의.의결할 수 있다

1.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3.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4.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개정 2004.1.15>

③ <삭제 2016.3.23>

④ <삭제 2016.3.23>

⑤ <삭제 2016.3.23>

⑥이사회는 소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결의와 이사회의 결의가 다른 때에는 후자의 결의에 의한다

⑦소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⑧ <삭제 2016.3.23>

제12조 <삭제 2011.3.30>

제12조의1(내부거래위원회) <삭제 2016.3.23>

제12조의 2(감사위원회) <삭제 2016.3.23>

제13조(보상위원회) <삭제 2016.3.23>

제14조(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삭제 2016.3.23>

제15조(사외이사후보의 자격요건) <개정 2004.1.15>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고려하여 사외이사 후보를 심사한다. <개정 2004.1.15>

1.경영분야의 지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의 전문가
2.경영환경을 이해하고 지식과 경험을 체계적으로 소유한 자
3.방송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사회활동이 왕성한 자
4.기타 이사로서 자질과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검증된 자

제15조의 2(사내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 <개정 2010.5.25>

사내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 후보는 대표이사가 주요주주와 협의하여 이사회에 후보를 보고하고 주주총회 이전에 주주들에게 사내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 후보를 통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회사의 공고방볍에 따라 신문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 간사) <개정 2014.02.25>

①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필요시 소위원회 운영기간동안 업무보조 직원을 둘 수 있다.

②이사회 및 소위원회의 간사는 소관부서의 장 또는 직제순위 상급자로 한다. 단, 소관부서의 장과 직제순위 상급자가 사내이사인 경우 소관부서 내 관련팀장이 간사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간사는 관련업무를 수행함으로서 지득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18조(필요경비)
임원 보수 및 퇴직금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외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5.25>

제19조(사외이사 지원 및 임기) <개정 2022.03.29>
① 사외이사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임직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회사는 사외이사가 정보 제공을 요청 시 이에 응해야 하나, 해당 정보가 회사의 중요한 기밀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외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제공한다.
② 사외이사는 최장 6년까지 재직할 수 있으며, 회사 또는 계열회사에서 각각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이 9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2001. 2)
(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3.12)
(시행일)이 규정은 2001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3.28)
(시행일)이 규정은 2001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4.19)
(시행일)이 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5.17)
(시행일)이 규정은 2001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6.28)
(시행일)이 규정은 2001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2.5)
(시행일)이 규정은 2002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3.9)
(시행일)이 규정은 2002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2.26)
(시행일)이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15)
(시행일)이 규정은 2004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2.26)
(시행일)이 규정은 2004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1.18)
(시행일)이 규정은 2004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05.25)
(시행일)이 규정은 2010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07.01)
(시행일)이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3.30)
(시행일)이 규정은 201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3.16)
(시행일)이 규정은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2항의 개정 내용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6.25)
(시행일)이 규정은 2013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02.25)
(시행일)이 규정은 2014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03.28)
(시행일)이 규정은 201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09.23)
(시행일)이 규정은 201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8.11)
(시행일)이 규정은 2015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3.23)
(시행일)이 규정은 2016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7.18)
(시행일)이 규정은 2019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9.24)
(시행일)이 규정은 2020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3.29)
(시행일)이 규정은 2022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9.22)
(시행일)이 규정은 2022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